

KERI Brief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 문제점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키고 있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어, 이는 상속재산의 감소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시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58%를 넘어 가장 높고, 일본(55%), 미국(39.9%), 독일(30%), 영국(20%) 순으로 나타나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의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계비속에 대한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2위이고, 최대주주할증평가시 사실상 1위(60%)이며, 2018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 3번째이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100%) 다음으로 2위(92%)인데 기업승계시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되어 소득세와 상속세의 부담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승계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한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기업승계가 기업 및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되어야 한다.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되어야 할 것이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인 대안으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추후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1. 검토 배경

□ 故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후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음

- 이진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약 18조 2,251억원이며, 이를 물려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만 10조 6,022억원에 달함
 -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세액을 당장 현금으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¹⁾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6년에 걸쳐 납부하더라도 매년 약 2조원을 부담해야 함
- 배당 확대도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지나친 배당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주식을 매각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경영권 승계 및 방어가 어려울 수 있음

□ 기업승계 문제가 선결되어야 경영 의욕도 높아지고 기업의 존속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텐데, 지금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승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상속세가 차지하는 내국세 비중(약 1.2%, 2019년 기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계속 상속세를 강화하고 있음
- 기업은 승계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의 성장동력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쓰리세븐(손톱깎이 생산업체, 당시 세계 1위)은 지난 2008년 150억원의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유니더스(콘돔 생산업체, 세계 1위)는 5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으며, 락앤락(밀폐용기 제조업체, 국내 1위)은 생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여 2017년 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있음

□ 결국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의 국제비교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1) '연부연납제도'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 상속증여의 경우 5년의 기간이 주어짐

II. 상속세제의 국제 비교

1.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비교

□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2위이고, 2018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3위로 국제적 비교 측면에서 매우 과중한 수준임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 25.3%의 2배에 달하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하여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될 수 있음²⁾

- 2018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41%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음
- 상속세 실효세율은 9개년 간 평균 35.6%인데, 2013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실효세율 35.6%은 명목 최고세율 50%과 약 14% 차이가 나고 있음
 - 종합소득세의 경우 실효세율과 명목 최고세율의 차이는 약 20%³⁾이고 근로소득세의 경우 약 34%⁴⁾에 달하고 있어, 소득세와 비교해 볼 때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 중소기업은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3) 2018년 기준 실효세율 21.3%, 명목 최고세율 42%
- 4) 2018년 기준 실효세율 14.1%, 명목 최고세율 42%

〈표 1〉 OECD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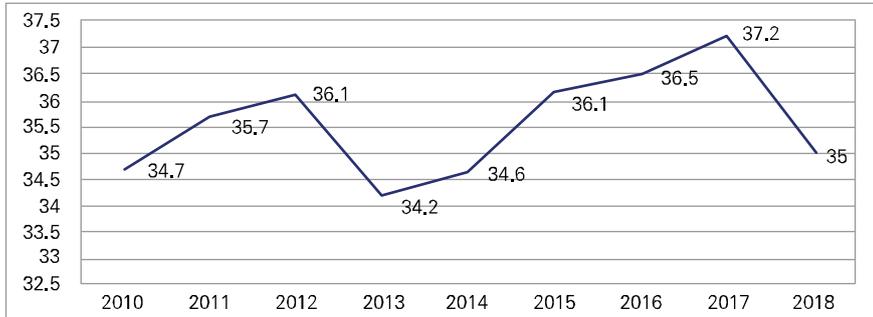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상속세 최고세율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2018년 기준)
	직계비속	제3자(일반)	
벨기에	30	80	0.72
프랑스	45	60	0.61
일본	55	55	0.40
한국	50 •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시 '60%'에 달함	50	0.41
독일	30	50	0.20
영국	40	40	0.25
미국	40	40	0.10
네덜란드	20	40	0.22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국내외 기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중소기업 포커스, 2020.10.

〈그림 1〉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

(단위: %)



주: 평균 실효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표 2〉 OECD 주요국의 상속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단위: %)

구분	최고세율		
	상속세(직계비속)	소득세	상속세+소득세
벨기에	30	50	80
프랑스	45	45	90
일본	55	45	100
한국	50 •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시 60%	42	92 (102)
독일	30	45	75
영국	40	45	85
미국	40	37	77
네덜란드	20	52	72

□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100%) 다음으로 2위(92%)인데 기업승계시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14위로 모두 높음
-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올리고 있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10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인상되어 소득세 순위도 7위가 될 것임

□ 한편, 1997년부터 기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고, 요건이 엄격해서 활용이 저조함

-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했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사업영위나 상속인의 사업종사·대표자취임 등 엄격한 적용요건 및 가업·고용 유지 등 사후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해외 기업승계세제지원(기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⁵⁾이 그 대상이며, 대부분의 적용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완화되어 있고 사후관리기간도 우리나라(7년)보다 짧음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제한도(기업영위기간),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은 외국의 유사 제도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워 활용도가 저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기업상속공제제도는 2018년 연평균 이용 건수가 84건, 총 공제금액 2,365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임. 기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 3,169건, 공제금액 276억원(한화 약 36.5조원)에 달하고 있어 기업상속공제 적용건수가 독일보다 100배 이상 적음
	5) 일본은 비상장중소기업에 한정함

〈표 3〉 주요국의 기업상속공제 제도 비교

구 분	한국	독일	일본	영국	
사전 요건	적용 대상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심사 •자산 5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기업규모 제한 X〉 •자산 2,600만유로 초과 기업은 필요성 심사 절차	•비상장 중소기업	X
	피상속인 요건	•기업영위기간 10년 이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특수관계인 포함 50%(상장 30%) 이상	•피상속인 및 조합원 합산 25% 이상	•승계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의결권 50% 초과 보유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
	상속인 요건	•2년내 가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X	•피상속인의 친족, 상속개시 직전 임원,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내 대표 취임 •최대주주, 의결권주식의 50% 초과 보유	X
기업상속 공제금액	•주식, 사업자산 등 가액 100% •한도: 200억원(10년 이상), 300억원(20년 이상), 500억원(30년 이상)	•(85%공제) 비상업용자산 50% 이하, (100%공제) 비사업용자산 10% 이하 •자산 2,600만유로 초과시 75만유로당 1%p씩 공제율 감소, 최대공제가능 자산 9천만유로	•발행주식총수의 2/3 한도(특별조치: 공제제한 없음) •비상장주식의 80% 상속세 유예 (특별조치: 전부)	•100%: 비상장주식, 사업관련지분 •50%: 상장주식, 토지, 건물, 설비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7년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 (중분류내 변경은 허용)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80%+7년 평균100%	•① 85% 공제요건 - 5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 5년간 400% 이상) •② 100% 공제요건-7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 (급여총액 7년간 700% 이상)	•상속 후 5개월내 대표이사 취임 및 이후 5년간 대표직, 상속지분 유지 •근로자 수 80% 이상 5년간 유지(예외 및 탄력 적용가능)	X	

2. 실제 기업승계 사례의 세부담 국제 비교

□ 18조 2천억원의 상장주식을 상속한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58%를 넘어 가장 높고, 일본(55%), 미국(39.9%), 독일(30%), 영국(20%) 순으로 나타남

- 자본이득세 과세국가 중 캐나다는 상속시 16.5%의 실효세율을 보이고,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속시 과세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30억원 초과시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자산에 대해 20% 할증평가됨. 인적공제는 최대 30억원, 신고세액공제는 3% 적용됨
- ‘미국’의 상속세는 백만달러 초과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통합공제액은 1,158만달러(약 131억원)까지 공제됨⁶⁾
- ‘일본’의 상속세는 6억엔(약 65억원) 초과시 55%의 세율이 적용되며, 기초공제액 3천만엔에 상속인 수당 6백만엔을 합한 금액을 공제함. 법인용 사업승계세제는 비상장기업에만 적용됨
 - 특이한 점으로 일촌 등의 혈족이 아닌 경우 20%를 가산하여 과세함
- ‘독일’의 상속세는 친인척 수준에 따라 법정세율이 달라지는데, 1그룹(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에 대해 2,600만유로(약 346억원) 초과시 최대 30%까지 과세되고,⁷⁾ 인적공제⁸⁾와 특별생계비공제⁹⁾가 적용됨. 가업상속공제는 9천만유로(약 1,200억원) 이상 사업관련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영국’의 상속세는 32만5천파운드(약 4억8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금액은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자산공제는 상장주식의 50%까지 적용됨¹⁰⁾
-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서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포함률 50%를 적용하고 214,369캐나다달러(약 1억8천만원) 초과시 최대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사망에 따른 상속을 유상이전처럼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과세하되, 자본이득의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전부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률을 곱한 금액에 한해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음
- ‘호주’는 1979년 상속세 폐지 후 1985년 자본이득세로 대체했음. 자본이득이 실현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과세사건이며, 상속의 경우 사망자의 취득원가를 상속인이 승계해서 추후 처분하는 경우 과세함
 - 추후 처분시 일반소득과 통산해서 과세하며, 180,001호주달러(약 1억5천만원) 초과시 45%의 세율로 과세됨
-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으며, 자본소득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상속처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상속인이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함

- 6) 1인당 통합공제액은 1,158만달러이며, 결혼한 부부는 1명이 통합공제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시 2,316만달러를 공제할 수 있음
- 7) 2그룹은 43%까지 3그룹은 50%까지 과세됨. ‘2그룹’은 형제·자매, 삼촌·이모, 조카, 양부모, 이혼한 배우자, ‘3그룹’은 기타 가족을 말함
- 8) 배우자 50만유로, 자녀 40만유로 등
- 9) 배우자 25.6만유로, 20세 이상 자녀 10,300유로
- 10) 비상장주식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표 4〉 주요국의 기업승계시 실제 상속세 부담액 비교

구 분	상속세 과세					자본이득세 과세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과세대상	18.2조원 × 1.2 (최대주주할증 평가 20%)	18.2조원	18.2조원	18.2조원	18.2조원	18.2조원	18.2조원
공제	30억원 (인적공제 최대액)	131억원 (통합공제, 1,158만달러)	5억8천만원 (기초공제, 5,400만엔)	22.6억원 (인적공제 4인, 170만유로), 3억8천만원 (특별생계공제, 286,900유로)	4억8천만원 (비과세부분, 32만5천파운드), 사업자산공제 50%	포함률 50%	-
세율 적용	50%	40%	55%	30%	40%	33%	-
총 세액	10조9,180억원 - 3,275억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10조5,905억원	7조2747억원	10조96억원	5조4592억원	3조6399억원	3조30억원	- (추후 상속인이 처분시 과세)
실효세율	58.2%	39.9%	55.0%	30.0%	20.0%	16.5%	-

주: 18조2천억원의 주식(상장)을 상속한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국제만 계산하였음

III.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 현재 OECD 36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13개국이며, 그 중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 도입했음

○ OECD 회원국 총 36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63.8%),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3개국(36.2%)인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직계비속에게 상속세율을 추가 인하는 국가는 14개국¹¹⁾이며 이 중 4개국은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강화한 이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스웨덴, 체코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상속세를 완화·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가 되었음

□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키고 있고, 확실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장애물로 작용되며, 이는 상속재산의 감소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이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시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58%를 넘어 가장 높고, 일본(55%), 미국(39.9%), 독일(30%), 영국(20%), 캐나다(16.5%) 순으로 나타나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의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음

- 유가증권(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변영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고 최대주주할증평가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식의 비중이 크다면 실효세율은 60%에 근접하게 됨¹²⁾

-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2위이고(일본 55%), 최대주주할증평가시 사실상 1위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 3번째 임(2018년)

11) 프랑스, 벨기에, 독일, 칠레,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이탈리아, 면제 4개국(스위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헝가리).

12) 2018년 기준 상속재산 500억원 초과구간에서는 주식(유가증권)이 가장 큰 비중(79.3%)을 차지하고 있고, 토지·건물 비중은 6.9%에 불과한 상황임.

〈표 5〉 OECD 국가의 상속세 과세 현황

구분	국 가
상속세 부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상속세 폐지 또는 미도입	노르웨이, 뉴질랜드, 멕시코, 스웨덴,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호주, 에스토니아·라트비아(미시행)

자료: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100%) 다음으로 2위(92%)인데 기업승계시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되어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도 가장 크게 나타남

-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10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인상되어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합계가 105%(95%)가 될 것임

○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요건, 공제한도 등이 너무 엄격한 상황이라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2011~2018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84건, 총 공제금액 2,365억원인 저조한 상황으로 실효성이 없음

□ 기업승계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상속세 폐지 후 기업승계에 한정된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임

○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임

-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국제적 조세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고려할 때,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되어야 함

○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

순환을 위해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해야 할 것이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장기적인 대안으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함

- 기업승계에 대한 전면적인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추후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것임

-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실효성이 없는 현행 가업상속공제보다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표 6〉 기업승계 관련 자본이득세 도입방안

구 분		자본이득세 도입방안
요건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기업
	가업 및 피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영위기간〉 •5년 이상 경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총사 〈지분율〉 •30%(상장20%)이상(특수관계인 포함)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이연〉 •상속시 주식, 사업용자산 비과세 •대상자산 처분시 자본이득 과세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기간〉 5년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자산 50% 이상 처분 금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총급여기준 매년 100%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0년 11월 23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